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8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6. 5.  
제출자 : 달성군청



## 1. 제안이유

축구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유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구성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임명 및 운영위원회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임무, 자격, 해임 및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8조)
- 라. 복무, 훈련, 보수 등 운영에 관련 사항 규정(안 제9조~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(1) 입법예고(2025. 5. 9.~ 5. 29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 - (6) 비용추계서 : 별첨 참고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달성군청 유소년 축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(이하 “유소년축구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, 부단장,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(이하 통틀어 “지도자”라 한다) 및 선수로 구성한다.

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4명(감독 1명, 코치 3명), 선수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.

**제3조(임용 등)** 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, 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임용한다.

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이 재임용에 적용할 평가기준 등은 군수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침」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④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)** 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

운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.

1. 기획예산과장, 체육진흥과장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인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단원의 임용
2. 단원의 해임 및 징계
3.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.

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1. 개최 일시
2. 출석위원의 서명
3. 심의안건과 내용
4. 의사
5. 그 밖에 중요한 사항

**제5조(임무)**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,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의 단원을 지휘·감독하고,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하며,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.

**제6조(단원의 자격)** 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

**제7조(해임)**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.

1. 지도자 중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
2. 지도자 중 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
3.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
4.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
5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유소년축구단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
6. 유소년축구단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
7. 단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

**제8조(겸직 금지)**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.

**제9조(복무 및 훈련)**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, 단장이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보수 등의 지급)**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고, 군수가 지침으로 정하는 군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유소년축구단 단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정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지침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[별첨]

##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축구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유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- 이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달성군청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, 운영경비(대회출전비, 훈련간식비, 유니폼 및 운동복 구입비, 상해보험 지원비 등)의 비용이 발생

### 3. 관련조문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(안) 제9조제3항, 제10조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 건 비 : 매년 201백만원 정도(\*2025년 하반기 기준 109백만원)
- 운영경비 : 매년 95백만원 정도(\*2025년 하반기 기준 76백만원)

나. 추계 결과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(안) 시행에 따라 연 29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: 자체예산 약296백만원 정도(연간) (\*2025년 하반기 기준186백만원)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### 6. 작성자 :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나수진

##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	4차년도 (2028)	5차년도 (2029)	계
세 입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지 방 세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의존재원	-	-	-	-	-	-
세 출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인 건 비	109,560	201,120	201,120	201,120	201,120	914,040
운영경비	76,800	95,700	95,700	95,700	95,700	459,600
재원 조달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	지방세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	세외수입	-	-	-	-	-
지방채	-	-	-	-	-	-
기 금	-	-	-	-	-	-
특별회계	-	-	-	-	-	-
군 비	186,360	296,820	296,820	296,820	296,820	1,373,64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등)	-	-	-	-	-	-